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17
----------	-------

발의연월일 : 2025. 9. 11.

발 의 자 : 남인순 · 서영석 · 박홍근
장철민 · 전용기 · 이수진
김문수 · 이인영 · 박 정
허종식 · 김 윤 · 고민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간 약 4배 이상 증가하였음.

이에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리고,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려는 것임

(안 제78조의2제1항 및 제104조제1항제5호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8조의2(가산금) ①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u>100분의 10</u>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제78조의2(가산금) ① ----- ----- ----- ----- ----- ----- ----- $100\frac{1}{10}$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제7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② ~ ④ (생략)	<u>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u> ② ~ ④ (현행과 같음)
-------------------	--